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입법예고(2025. 10. 31. ~ 11.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or other alloy steel)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51.1000호, 제7208.51.9000호, 제7208.52.1000호, 제7208.52.9000호, 제7225.40.9010호, 제7225.40.9091호 또는 제7225.40.90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4.75밀리미터(mm) 이상이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고,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 본문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다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에 규정된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51.1000호 또는 제7208.51.9000호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 가. ASME CODE SA516-70(두께 134mm 이상)
 - 나. ASME CODE SA299-Grade B(두께 50mm 이상)
 - 다. SA302-Grade B
 - 라. SA302-Grade C

[별표 2]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제3조제2항 본문 관련)

공급국	공급자
중국	1. Baoshan Iron & Steel Co., Ltd., Wuhan Iron & Steel Co., Ltd., Shanghai Meishan Iron & Steel Co., Ltd., Baosteel Zhanjiang Iron & Steel Co., Ltd. 및 Shandong Iron And Steel Group Rizhao Co.,Ltd 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Howa Trading Co.,Ltd
	2. Jiangsu Shagang Steel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Jiangsu Shagang International Trade Co.,Ltd. 나. Shagang International (Singapore) Pte.Ltd. 다. Kwan Tak International (Singapore)Pte.Ltd.
	3. 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 Ltd 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Xisc (Singapore) Pte. Ltd.
	4. Angang Steel Company Limited 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Angang Group Hong Kong Co., Limited
	5. Jiangyin Xingcheng Special Steel Works Co., Ltd.
	6. Nanjing Iron and Steel Co., Ltd 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Singapore Jinteng International Pte.Ltd. 나. Nanjing Iron and Steel Group International Trade Co., Ltd.
	7. Jingye (Yingkou) Medium Plate Co.Ltd 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Jingye International (Singapore) Company PTE. LTD. 나. Jingye International (HK) Company Limited 다. Top (HK) Commodities International Limited 라. USR International Limited 마. KSC Hongkong Limited 바. Cumic Steel Limited
	8. Zhongpu (Handan) Iron And Steel Co., Ltd 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Hebei Puyang New Material Industry Co.,Ltd. 나. Hainan Puyang Supply Chain Management Co.,Ltd.
	9. HBIS Wuyang Iron and Steel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 하는 USR International Limited

[별표 3]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규격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 건설기계 및 특수목적 장비(차량) 생산용 내마모강 후판 및 고장력강 후판 ¹⁾	0
	2. Xiamen ITG AI Cloud Solutions Co. Ltd 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 그 밖의 공급자	2. 기타	34.10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 25.40.9010호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중국국가표준(GB/T 24186)의 NM400, NM500 강종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건설기계 및 특수목적 장비(차량)에 사용되는 인장강도 980MPa 이상인 제품(내마모강 후판)

- (1) 두께 120mm 이하
- (2) 폭 2,600mm 이하
- (3) 표면경도 HBW 370 이상 550 이하

나) EN 10025-6 S890Q 규격 또는 EN 10025-6 S960QL 규격으로 아래의 성분, 함량 및 특성을 모두 충족하고, 건설기계 및 특수목적 장비(차량)에 사용되는 인장강도 980MPa 이상인 제품(고장력강 후판)

- (1) 탄소(C)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8% 이하
- (2) 규소(Si)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80% 이하
- (3) 망간(Mn)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10% 이하
- (4) 인(P)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25% 이하
- (5) 황(S)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5% 이하
- (6) 크롬(Cr)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50% 이하
- (7) 충격 테스트(Impact Test) -20℃ 기준 평균값이 34J 이상 이거나 -40℃ 기준 평균값이 27J 이상일 것
- (8) 연신율(Elongation)이 9% 이상